

도쿄(東京)고등재판소 항소심에서 3 사건 모두에 항소기각

판결

2015년 7월 29일

성명문

「모르드개의 모임」

(종교법인 『小牧者訓練会』에 의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대표 가토 고이치(加藤光一)

2015년 7월 29일, 도쿄(東京) 고등법원 제 1 민사부(이시이 타다오[石井忠雄] 재판장)은 소목자훈련회(小牧者訓練会) 대표 변재창(卞在昌)과 관련된 성희롱 재판(제 1 사건),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 재판(제 2 사건) 및 명예훼손 재판(제 3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記

(1) 성희롱 재판(제 1 사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인 변재창 및 항소인 종교법인 소목자훈련회(국제복음기독교단[國際福音キリスト教会])(이하, ‘교단’이라 함)에 변재창의 불법행위(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변재창 개인과 교단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언도함.

【성희롱 재판 제 1 심 원고 A,B,C,D 4명 전원 승소】

(2)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 재판(제 2 사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인 E(제 1 심 원고 E)의 항소기각 판결을 언도함. 【Power harassment 재판 제 1 심 원고 E의 패소】

(3) 명예훼손 재판(제 3 사건)

‘성희롱 재판 및 Power harassment 재판에서의 제 1 심 원고들의 피해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이러한 공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는

변재창의 호소를 인정하지 않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변재창 및 교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언도함. 【변재창 및 교단의 패소】

【성희롱 재판】

직접증거가 적은 성희롱 재판에 대해서는, 제 1 심에 이어 제 2 심(항소심)에서도 제 1 심 원고 4 명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제 1 심 피고 변재창으로부터 불법행위(성희롱(외설)행위)를 받아온 피해가 인용되고, 변재창 개인과 교단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에서, 저희들은 이번 판결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제 1 심 판결보다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변재창의 불법행위의 악질성을 지적하며, ‘제 1 심 피고 변재창의 행위는 원고들의 성적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재차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변재창을 중심으로 하여 권위주위적 운영이 이루어진 교단에 대해서도, 변재창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제 1 심원고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것이 재차 인용된 것에 더하여, 제 1 심에 이어 변재창 개인은 물론 교단에게도 배상책임이 부과된 점은 조직으로서의 교단의 자세가 탄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이 제 1 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건발생의 메커니즘이 교단 및 변재창 개인에 의한 특이한 권위주의적 교회운영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허락한 교단 풍토를 명확하게 탄핵한 점을 저희들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인 변재창의 성벽에 대하여 ‘피고 변재창과 여성 신도들과 거리가 부자연스러울 만큼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변재창의 여성 신도들과의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입맞춤이나 포옹 등)이 일반사회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한 제 1 심판결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서 변재창의 불법행위(성희롱 행위)가 재차 인용됨에 따라, 제 1 심원고들의 인권이 지켜지게 된 것을 저희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의해 받았을 원고들의 마음의 상처도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 판결】

Power harassment 재판에서는 제 1 심원고 청구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그 호소가 기각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향후 상고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재판】

‘성희롱 재판 및 Power harassment 재판에서의 제 1 심원고들의 피해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이러한 공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변재창 및 교단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민사재판이 제기된지 벌써 6 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변재창뿐 아니라 교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성희롱 재판(제 1 사건) 및 명예훼손 재판(제 3 사건) 모두에서 패소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여 신속하게 사죄하여 속죄로서 책임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성희롱 피해를 받아 오랫동안 힘겨워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의 치유와 권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법정에서 진지하고 끈질기게 원고들의 인권을 옹호해주신 변호사 분들, 또한 기도와 헌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재판을 지탱해주신 지원자 및 초교파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목사의 권위를 강조한 나머지 상기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일본의 일부 교회의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널리 구제되고, 그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 나갈 것입니다.

이상